



미국의 소셜미디어 규제 논란과 「통신품위법」 제230조 개정 논의

박아란 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 교수

인터넷 초창기였던 1990년대 중반 인터넷서비스사업자들의 ‘콘텐츠 관리(contents moderation)’ 업무는 수작업으로 가능한 것이었다. 게시판 형태가 주를 이루던 당시의 인터넷 환경에서는 위법하거나 신고가 들어온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차단하는 것은 비교적 단순한 일이었다. 그로부터 30여 년이 흐른 뒤 2023년의 인터넷 환경은 매우 복잡하다. 포털로 불리는 다기능 인터넷서비스를 비롯하여 페이스북(Facebook), 엑스(X, 구 트위터(Twitter)), 인스타그램(Instagram), 틱톡(TikTok) 등 소셜미디어와 유튜브(YouTube)까지 하나의 형태로 정의내리기 어려운 복잡한 디지털 플랫폼에서 다양한 형태의 온라인 콘텐츠가 폭발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다. 더구나 챗GPT, 미드저니(Midjourney) 등 생성형 AI(Artificial Intelligence)의 급성장은 디지털 환경의 대격변을 예고하고 있다.

그렇다면 디지털플랫폼을 운영하는 사업자들은 어느 정도로 콘텐츠 관리를 행하는 것이 사회적 차원의 공익을 위해 바람직한 것일까?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는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콘텐츠를 생성하고 의견을 표명하도록 콘텐츠 관리를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나 명예훼손, 음란 등 위법한 게시물과 특히 청소년을 상대로 우울증과 섭식장애를 초래하는 유해한 게시물,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그럴듯하게 포장한 허위정보와 딥페이크(deepfake)까지 위험한 콘텐츠들로 지뢰밭이 되어버린 디지털 환경에서 플랫폼사업자들이 콘텐츠 관리를 최소화하는 것은 위험을 방치하는 것과 다름없다. 유럽연합(EU)에서는 「디지털

털서비스법」(Digital Service Act, DSA)을 제정하여 플랫폼의 유형, 규모, 행위에 따라 차등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촘촘하게 부과하고 있다.¹⁾ 「디지털서비스법」은 신뢰 가능한 디지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구체적인 절차적 보장수단을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맞춤형 광고, 추천 시스템에 있어서의 투명성 보장을 강조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인터넷사업자의 자율규제를 정책적 방향으로 삼은 미국에서는 플랫폼사업자에게 특정 의무를 부과하는 데 비교적 소극적이었다. 이는 후술하는 1996년 제정된 「통신품위법」(Communications Decency Act, CDA) 제230조의 영향도 크지만, 자국의 기업이 인터넷 환경에서 주도권을 잡을 수 있도록 규제보다는 성장을 선택한 정치적 결단의 결과이기도 하다. 그러나 미국에서도 플랫폼기업 규제와 관련된 정치적, 학술적 논의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2021년 발생했던 연방의회 의사당 난입사건과 관련된 온라인 표현의 자유 논란이 있다.

플랫폼의 콘텐츠 관리와 합헌 논쟁

2021년 1월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에 불만을 품은 트럼프(D. Trump) 전 대통령의 지지자 수천 명이 의회로 난입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미국 민주주의 상징인 의회가 폭력적 시위자들에게 점거당한 모습은 전 세계를 충격에 빠트렸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대선 패배에 불복하며 투쟁할 것을 촉구했고 시위대를 애국자라고 두둔했다. 트위터는 추가적 폭력선동의 위험을 막는다는 이유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개인 계정을 영구 정지시켰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스냅챗(Snapchat), 트위치(Twitch), 유튜브도 트럼프가 계정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 트럼프 지지자들의 유튜브 계정도 대선 관련 거짓 주장을 유포했다는 이유로 광고를 통한 수입창출 기능을 상당 기간 정지당했다.

소셜미디어 기업들의 이러한 조치는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논란을 일으켰다. 대통령을 비롯한 공인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플랫폼 기업이 자의적으로 영구 정지시키거나 게시물을 차단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일까? 이를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고 폭력을 선동하는 위험한 게시물을 플랫폼 기업이 차단하는 것은 합리적이며 필요한 조치라고 볼 것이다. 반면, 이를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시민으로부터 권력을 부여받지 않은 사기업이 국민이 선출한 공직자의 계정을 함부로 차단하는 것은 사적 검열(private censorship)로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것이다.

1) 김민정·최요섭·김유향 (2023). EU 디지털서비스법의 뉴스미디어 분야 합의 분석. 서울: 한국언론진흥재단.

이러한 논쟁 속에 플로리다와 텍사스에서는 소셜미디어 관련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들은 소셜미디어 기업의 ‘콘텐츠 관리(contents moderation)’ 행위를 제한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2021년 5월 플로리다 주(州)에서 통과된 법률(Senate Bill 7072)은 소셜미디어 기업들이 정치인들의 계정을 차단하거나 금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하루에 최대 25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같은 해 11월 텍사스 주(州)에서도 대규모 소셜미디어 기업들이 이용자들의 견해를 바탕으로 표현을 금지하는 것을 막고 콘텐츠 관리에서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규정한 법률(House Bill 20)을 만들었다.

공화당 지지자들은 플랫폼 기업들이 보수적 목소리를 부당하게 제한해왔다고 해당 주법들을 지지했다. 그러나 민주당 지지자들은 위험한 게시물을 플랫폼 기업이 제대로 차단하지 못하고 있다며 법을 통해 더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두 법률의 합헌성은 소송을 통해 다투어지고 있는데, 플로리다에서는 당해 소셜미디어법이 기업의 자율적 콘텐츠 권한을 제한하는 일종의 검열규정이라고 판단하여 효력정지를 판결한 바 있다. 결국 연방대법원도 해당 법률들이 수정헌법 제1조가 보호하는 소셜미디어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로 결정했다. 연방대법원의 판결은 2024년 내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통신품위법」 제230조에 대한 지속적 논란

플랫폼 기업들이 콘텐츠 관리를 강제하거나 금지하는 법률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는 배경에는 오랫동안 인터넷서비스사업자들을 다양한 책임으로부터 면책시켜온 「통신품위법」 제230조가 있다. 이 법이 제정된 것은 1990년대 초중반에 내려진 두 개의 판결²⁾이 모순적 상황을 초래했기 때문이다. 첫 번째 판결에서는 인터넷서비스사업자가 게시물에 대해 강력한 관리·감독을 행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적 게시물에 대한 법률적 책임을 부담하게 된 반면에, 두 번째 판결에서는 게시물을 관리하지 않고 방치한 사업자는 관리권한이 없었다는 이유로 면책되는 모순이 발생했다. 즉, 게시물을 관리·감독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이 인터넷사업자의 입장에서 오히려 안전한 전략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인터넷서비스사업자들이 인격권을 침해하는 게시물을 방치할 것을 우려한 미국 의회는 인터넷서비스사업자들을 면책시키는 법안인 「통신품위법」 제230조를 채택하게 되었다.

1996년 제정된 「통신품위법」 제230조 (c)(1)항은 “컴퓨터서비스제공자나 사용자는 다른 콘텐츠 제공자가 작성한 정보에 대해 발행인(publisher)이나 화자(speaker)로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제230조 (c)(2)항은 인터랙티브(interactive) 컴퓨터 서비스 사업자가

2) 박아란 (2020), 디지털 인격권 침해와 인터넷서비스사업자의 책임에 대한 비교법 연구, <언론학보>, 제64권 제3호, pp.5-46.

선한 의도로 음란하거나 폭력적이거나 기타 유해한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관리했을 때 민사적 책임으로부터 면책시킨다. 당시 의회 기록에 따르면 이러한 조항의 입법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서 첫째, 유해한 온라인 게시물을 관리·감독하는 ‘선한 사마리아인(Good Samaritan)’의 역할을 행한 인터넷서비스사업자를 보호하여 자율규제 환경을 조성하고, 둘째, 정부 규제로부터 온라인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었다.

「통신품위법」 제230조가 신설된 이듬해인 1997년에는 명예훼손적 게시물에 대한 법률적 책임으로부터 인터넷서비스사업자가 완전 면책된다는 중요한 판결이 나왔다. *Zeran v. America Online, Inc.*(1997) 사건에서 제란(Zeran)은 자신에 대해 명예훼손적인 익명의 게시물을 삭제해달라고 아메리카 온라인(America Online)에 요청했으나 게시물은 상당기간 방치되었다. 익명 게시자의 신원을 파악할 수 없었던 제란은 게시판 운영자인 아메리카 온라인을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다. 제란은 인터넷서비스사업자가 게시물의 ‘발행인(publisher)’은 아닐지라도 적어도 게시물 삭제요청을 받은 시점부터는 명예훼손적 게시물의 ‘배포자(distributor)’로서 법률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제230조의 입법 목적을 고려했을 때 인터넷서비스사업자는 발행인으로서 뿐만 아니라 배포자로서의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면 연방항소법원은 인터넷서비스사업자인 아메리카 온라인을 면책시켰다. 이 판결 이후에도 「통신품위법」 제230조는 인터넷서비스사업자를 다양한 법률적 책임으로부터 면책시킨 결과, 명예훼손뿐만 아니라 프라이버시 침해, 스팸 필터링, 감정적 고통 유발 등 다양한 불법행위 책임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 그러나 제230조는 저작권, 연방 차원의 범죄 기소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통신품위법」 제230조는 온라인에서 표현의 자유를 강력하게 보호하는 데 기여하였으나, 인터넷서비스사업자를 일괄적으로 면책시킴으로써 사업자에게 게시물 관리에 대한 동기를 약화시켰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아왔다. 인터넷서비스사업자가 불법적 게시물의 존재를 알고 있었는지를 따져볼 필요도 없이 무조건 면책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었기에 인터넷사업자들은 불법 게시물을 탐지하거나 신고 및 처리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할 동기가 약해졌다. 익명의 이용자들이 명예훼손적이거나 모욕적, 또는 차별과 혐오를 자극하는 게시물을 포스팅하는 웹사이트들이 성행하고 있으나 이러한 사이트의 운영자들도 제230조의 보호를 받기에 온라인 규제에 실질적 어려움이 있다. 또한 온라인 이용자가 허위정보(disinformation)나 오정보(misinformation)를 게시하더라도 웹사이트 운영자들은 이용자들의 게시물로 인한 책임을 면하게 될 가능성도 높다.



「통신품위법」 제230조 개정 논의

구글, 유튜브, 메타(Meta), 인스타그램, 틱톡 등 디지털 플랫폼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면서 플랫폼사업자들에게 위법하거나 유해한 게시물에 대한 관리책임을 지워야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졌다. 2018년에는 성매매를 조장하는 온라인 사이트를 규제하기 위한 FOSTA(Allow States and Victims to Fight Online Sex Trafficking Act) 법안과 SESTA(Stop Enabling Sex Traffickers Act) 법안이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으로 발효되었다. 두 법안이 마련되기 이전에는 성매매나 인신매매를 조장하는 웹사이트 게시물에 대해서도 「통신품위법」 제230조의 보호 아래 웹사이트 운영자들이 면책되어 많은 사회적 비판을 받았다. 그러나 FOSTA-SESTA 입법으로 인해 온라인 사이트를 통한 성매매와 인신매매를 규제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FOSTA-SESTA가 제정됨으로써 성매매를 조장, 촉진하기 위해 인터랙티브 컴퓨터 서비스를 소유, 관리, 운영하는 자에게는 벌금이나 징역, 피해자 배상명령 등을 부과할 수 있는 조항이 마련되었다. 온라인을 더욱 안전하게 관리하려는 FOSTA-SESTA의 입법목적에도 불구하고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이 법에 대해 지속적으로 비판을 가하고 있다. FOSTA-SESTA가 「통신품위법」 제230조의 정신을 훼손하여 플랫폼에게 게시물에 대한 책임을 지움으로써 온라인 검열을 조장하고, 성매매를 비형벌화하기 위한 표현도 과다하게 처

별하여 이용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고 반대론자들은 주장한다.³⁾

이후 제230조의 부작용에 대응하기 위해 다른 법안들도 발의되었다. 가령, 2019년 발의된 인터넷검열종식법안(Ending Support for Internet Censorship Act)은 대규모 플랫폼 기업은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방법으로 콘텐츠를 발행하고 있음을 연방통상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 FTC)에 입증해야 하고 이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제230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조항을 만들었다. 이 외에도 유사한 법안들이 통신품위법상 면책조항이 특정 경우에 플랫폼기업에 적용되지 않도록 규정하였으나 의회에서 통과되지는 못했다.

하지만 「통신품위법」 제230조의 개정 필요성은 소셜미디어가 사회적 이슈에 관여되었을 때 마다 강력하게 제기되었다. 대표적 사건이 2022년 발생했던 증오범죄 사건이다. 2022년 5월 미국 뉴욕주(州) 버팔로에서 백인 우월주의를 신봉하는 18세 소년인 페이튼 젠드런(Payton Gendron)이 슈퍼마켓에서 흑인을 상대로 총기를 난사하여 10명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젠드런은 라이브 스트리밍 플랫폼 트위치를 통해 범죄과정을 생중계했다. 트위치는 2분 만에 영상송출을 중단했으나 범인이 방탄 헬멧에 장착한 카메라로 촬영한 범행 영상은 페이스북, 트위터 등 다른 플랫폼을 통해 급속하게 퍼져나갔다. 이후 소셜미디어가 혐오와 폭력, 차별을 부추기는 콘텐츠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다는 비난과 함께 플랫폼 책임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커져갔다.

2023년에도 여러 관련 법안들이 상정되었는데 대표적으로는 See Something, Say Something Online Act(의심스러운 온라인 콘텐츠 신고법), SAFE TECH Act(Safeguarding Against Fraud, Exploitation, Threats, Extremism, and Consumer Harms Act: 사기·착취·위협·극단주의·소비자피해 방지법), Internet PACT Act(Internet Platform Accountability and Consumer Transparency Act: 인터넷플랫폼 책무성 및 소비자 투명성법), EARN IT Act(Eliminating Abusive and Rampant Neglect of Interactive Technologies Act: 인터랙티브 기술의 악용 및 만연한 방임행위 근절법) 등이 있다.⁴⁾ 이 법안들은 세부적 내용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통신품위법」 제230조가 제공하는 면책의 범위를 제한하여 인터넷서비스사업자가 위법적 게시물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책임을 묻거나 콘텐츠 관리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규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통신품위법」 제230조를 개정하거나 폐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미국 내에서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다. 제230조가 제정될 당시와 지금의 인터넷 환경이 크게 바뀌었기 때문에 면책

3) Mackey, A. (2022. 9. 15). The Fight to Overturn FOSTA, an Unconstitutional Internet Censorship Law Continues. (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 URL: <https://www.eff.org/deeplinks/2022/09/fight-overturn-fosta-unconstitutional-internet-censorship-law-continues>

4) 법안의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각주 10에 소개된 김민정·최요섭·김유향(2023) 연구서 참조.

조항에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 미국의 인터넷 환경은 제230조라는 초석 위에 만들어진 것이므로 이를 제거하는 것은 인터넷 산업의 기반을 흔들 수 있다고 우려한다.⁵⁾ 온라인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혐오표현이나 페이크 동영상도 일단 헌법이 보호하는 표현의 영역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이를 막기 위해 제230조를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주장도 있다.⁶⁾ 「통신법위법」 제230조의 강력한 수호자인 에릭 골드만(Eric Goldman) 교수는 웹사이트의 평판이 수익으로 이어지는 구조 속에서 유해한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생산하는 웹사이트는 경제적인 이유로 살아남기 어렵기 때문에 제230조가 이러한 웹사이트를 비호한다는 것은 오해라면서 제230조는 온라인 표현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여전히 필요하다는 입장이다.⁷⁾

플랫폼 역할론의 재정립과 절차적 투명성 확보

1996년 제정될 당시 「통신법위법」 제230조가 상정했던 디지털 세상은 인터넷서비스사업자들이 ‘선한 사마리아인’으로서 게시물 관리를 성실하게 행하여 유익한 게시물이 이용자들을 이롭게 하고 자유로운 표현이 보장받는 공간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낙관론은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부작용의 발생과 함께 흔들리고 있다. 디지털 플랫폼의 기능은 더욱 복잡해졌고 플랫폼사업자들은 폭증하는 게시물을 관리하는 데 있어 기술적,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유튜브 등 대규모 플랫폼사업자들은 자체적 규정과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위법하거나 위험한 콘텐츠를 관리하고 있지만 세계 각국의 상황에 적절하게 적용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때로는 플랫폼사업자들은 이용자들이 자신의 플랫폼에 더욱 오래 체류하도록 기술적 수단을 남용하기도 했다. 2021년 페이스북의 내부고발자 프랜시스 하우겐(Frances Haugen)은 페이스북이 청소년 정신건강에 해로운 게시물이 있음을 알면서도 방관했으며 정치 관련 허위 정보를 방치한 적도 있다고 폭로하여 충격을 주었다. 페이스북이 높은 조회수를 최우선시하면서 참여기반 랭킹을 활용하여 보다 자극적 게시물이 눈에 잘 띄도록 했다는 것이다. 사업자들은 콘텐츠 관리에서 알고리즘을 통해 이용자들이 더 오래 웹사이트에 머물도록 하고 있지만 이용자들은 어떤 알고리즘이 작동하고 있는지 제대로 알 수가 없다.

소수의 ‘선한 사마리아인’이 좋은 의도로 작동시키기에는 플랫폼 기업들이 너무 규모가 커

5) Kosseff, J. (2019). *The Twenty-six Words That Created the Internet*. New York: Cornell University Press.

6) Post, D. (2019. 8. 9). *The Sec. 230 Temperature is Rising. (The Volokh Conspiracy)*. URL: <https://reason.com/2019/08/09/the-sec-230-temperature-is-rising/>

7) Goldman, E. (2019). *An Overview of the United States' Section 230 Internet Immunity*. Santa Clara Univ. (Legal Studies Research Paper). URL: https://papers.ssrn.com/sol3/papers.cfm?abstract_id=3306737

졌다. 플랫폼 운영에 관여하는 인원도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으며 기업 내부에서도 다른 팀이 어떤 작업을 하고 있는지, 그 작동 알고리즘은 어떠한지를 이해하기도 어려운 환경에 처해있다. 그렇다고 하여 강력한 법을 통해 플랫폼 환경을 규제하기에는 기술이 너무 빨리 변하고 있으며 다양한 상황을 적절히 통제하기도 어렵다. 결국 기술을 가장 잘 이해하는 플랫폼 기업이 투명하고 공정한 자율규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정부와 의회는 이를 위한 규제의 틀을 마련하는 한편 지속적 관리감독을 행하는 방식으로 함께 움직여야 할 것이다. 극단적일 정도로 인터넷 기업을 면책시켜온 미국의 법체계가 조금씩 변화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공동규제의 방향으로 한발 내딛었음을 보여준다. 🇺🇸

